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45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추경호・서일준・金炳旭

송언석 · 성일종 · 김정재

김희국 • 윤두현 • 정희용

홍문표 • 이명수 • 권영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대상의 약 60퍼센트는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91퍼센트가 특정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 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을 "19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및"으로,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외 기회적 보는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를 "해당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를 "하당 중소기업이 다구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 2년이내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19년"으로,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
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	세액감면) ①
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	
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	
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	
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하여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u>2022년 12월 31일</u>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 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 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 권정비계획법 1 제6조제1항제2 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 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⑥ (생 략)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

<u>19년</u>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
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및
해당 중소기업이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
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다음 2년 이내에-

② ~ ⑥ (현행과 같음)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 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 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 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 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 <u>년 12월 31일</u>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 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 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 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

1. (현행과 같음)
2
<u>2022년 12월 3</u>
<u>1일</u>
<u>2025</u>
<u>년 12월 31일</u>
2022년 12월 31일
<u> </u>
<u></u>

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 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 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 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 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②
<u>19년</u>
<u>법인세의 100분의 100</u>

<u>의 50</u>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 3. (생 략)

③ ~ ①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① (현행과 같음)